

◇주요내용

- 가.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기한을 20년으로 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제13조의2 신설)
 -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시설이 아닌 기존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도시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 등을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할 수 있음.
 - 2)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관계 시·도지사 등은 공고된 사항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고 사항의 변경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 상실일 전까지 변경 공고를 해야 함.
 - 3)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됨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권자에게 해당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완화 등(제34조)
 - 1)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라 기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로 판정할 때 종전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동일 지역의 다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있는 동일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판정기준을 완화함.
 - 2)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지역의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등이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완화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함.
- 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추가(별표 2)

도시자연공원구역 주변 주민의 복지 증진 및 편의 향상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주차장, 실내체육시설, 도서관 및 보건소·보건진료소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혁신처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664호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중 “변명서”를 “답변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변명서”를 “답변서”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필요한 때”를 “필요한 경우”로, “변명내용”을 “답변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변명서부분”을 “답변서 부분”으로, “변명내용”을 “답변 내용”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송달하여야”를 “송달해야”로 한다.

① 위원회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소청인에게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피소청인은 지정된 기일 안에 답변서와 소청인의 수에 따른 부분(副本)을 제출해야 한다.

③ 피소청인은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사건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을 “출석할 수 없거나 심사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위원회 결정의 연기) 위원회는 심사 결과 징계처분 등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소청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변명자료”를 “답변 자료”로, “요구하여야”를 “요구해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탈퇴,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소청 심사에 관한 사무
2. 제2조에 따른 청구서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무
3. 제4조에 따른 소청대리인의 지정·선임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청심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 등의 정보가 공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피소청인이 소청심사위원회에 답변서 등을 제출할 때 사건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연기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령****●보건복지부령 제723호****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2020년 5월 4일****보건복지부장관 인****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2년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기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업의 대표자, 주소, 재무 현황, 연혁 등이 포함된 기업 현황
2. 의료기기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 의료기기 연구개발비의 투자 현황
4.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및 생산 현황(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담인력 및 연구·생산시설 현황
6. 중장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투자계획 및 실행계획
7. 의료기기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현황
8. 의료기기 특허등록 및 기술이전 실적
9. 의료기기 해외시장의 진출 현황
10. 사회적 공헌 활동 현황 및 관련 표창 실적
11. 의료기기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관련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내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기기업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인증마크의 도안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법 제12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지위의 승계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위의 승계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